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2. 24 선고 2024가단1046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2. 10.

판결 선고2024. 12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3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3. 12. 8.부터 2023. 12. 12.까지

합계 99,000,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0,0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4. 3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주진오